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FTC, Shell에 대한 조사 종결

12개월간에 걸친 집중 조사라고 불리는 일련의 절차의 결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 10월에 캘리포니아주 베이커필드에 있는 Shell Oil Products US's(이하 Shell)의 정유 사업에 대한 조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후에 셸은 정유공장을 Flying J., Inc.의 자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Big West of California, LLC에 매각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04년 3월에 이 조사를 개시했는데, 셸이 이 당시 원유를 정제하는 양을 줄임으로써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 가격을 인상시키고자 하자 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

에서는 “조사기간중에 입수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만일 이것이 매각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유공장의 폐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금지법상의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실제로 우리는 셸이 주장한 공장 폐문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대로 셸이 시장력을 소유·보유 및 행사하려고 한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한 셸과 다른 사업자가 공장을 폐문하기 위해 공모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2005. 5. 25. 연방거래위원회

가격담합한 인디애나주 레미콘 사업자 기소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대배심은 인디애나주의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 제조 및 판매업자를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의하면, Lee's Ready Mix & Trucking Inc.(이하 Lee's)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인디애나주의 몇몇 카운티에서 레미콘을 담합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Lee's와 담합 참가자들은 레미콘 가격의 인상 및 그 인상시기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담합 기간 동안 Lee's는 약 7백만 달러에 해당되는 레미콘을 인상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Lee's의 담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각 사업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레미콘에 대한 가격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하고,
 - 레미콘 가격 인상 및 그 시기에 관한 협의내용에 동의하여,
 -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 담합적이고 비경쟁적인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하였다.
- 레미콘은 시멘트, 쇠석(모래와 자갈), 물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타 첨가

물을 혼합한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 콘 크리트 믹서 트럭에 의해 운반되며, 일반 개인 소비자, 상인, 주정부 및 연방 정부 등에서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건축을 위해 구입하고 있다. "이번 레미콘 사업자에 대한 기소는 독점금지국에서 가격고정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 결과"라고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장인 Scott D. Hammond는 말했다.

Lee's는 셔먼법 제1조 위반인 가격고정으로 기소되었으며, 2004년 6월 22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경우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레미콘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였으며, 지난 5월 13일에 이 회사 대표인 Larry Lee는 가격고정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7월의 징역과 7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형에 동의했다.

2005. 5. 19. 연방법무부

가격담합에 참가한 외국인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

독일 레버쿠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엘사의 전 대표는 고무화학 시장에서 가격고정 국제담합에 참가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형사적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고 연방법무부는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코크(Wolfgang Koch)씨가 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

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고무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고정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독일 국적의 코크는 바이엘사에서 고무화학 제품의 생산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동안 담합에 참가해 왔던 것이다. 그는 법원이 승인함에 따라 4월의 징역과 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향후 화학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독점금지국이 고무화학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부과한 벌금액은 지금까지 1억 달러가 넘게 되었다. 고무화학은 고무제품의 탄성, 강도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서, 타이어, 실외 장식장, 고무호스, 벨트 및 신발 등에 이용된다. 매년 약 10억 달러 이상의 고무화학 제품들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가격고정 담합에 참가하는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기소할 것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공모행위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고무화학 산업에서 경쟁자간의 불법적인 협정에 대한 조사에서 적발한 일련의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고 Scott Hammond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장은 말하면서, "코크씨의 협조는 앞으로의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바이엘사와 Crompton사는 담합에 참가한 혐의로 각각 6,600만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또한 Crompton사의 대표였던 Joseph B. Eisenberg와 James J. Conway, 그리고 바이엘사의 대표였던 Martin Petersen은 유죄가 인정되어 현재 형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05. 5. 16. 연방법무부

한국기업 Hynix, D램의 가격카르텔에 관여 유죄판변과 함께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동의

동 사는 역사상 3번째로 고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한국의 dynamic random access memory(DRAM)(주 : 반도체기억소자 중 하나) 제조업자인 Hynix Semiconductor Inc는 수 십억 달러의 D램 시장에서 가격을 고정하는 국제적인 공모에 참가한 것에 대하여 유죄의 답변을 함과 동시에,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동의하였다고 법무부는 발표했다. 동사의 벌금액은 역사상 3번째, 과거 5년간 최대이다.

금일 소추를 포함하여 법무부가 현재까지 행한 D램 산업에 대한 심사의 결과는 2개 기업 5명의 개인을 소추하고, 벌금액은 총 3억 4,600만 달러

에 이른다.

D램은 컴퓨터, 전기통신 및 소비자
를 위한 전기제품 각종의 전자정보의
고속집적 및 회수를 가능케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이
다. D램은 PC, laptop, 워크스테이션
서버, 프린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personal digital assistant, 모뎀, 휴대
전화, 전기통신 허브와 router, 디
지탈 카메라, 비디오 리코더와 TV, 디
지탈 셋톱박스, 게임기,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에 사용되고 있다. 2004년
에 미국에서 D램의 판매액은 총 77억
달러였다.

「가격카르텔은 자유시장을 위태롭게
하고, 또한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Alberto
R. Gonzales 법무장관은 언급하였
다. 「금일의 소추와 그 결과로서의 유
죄담변은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
는 국제카르텔을 파괴하고 소추하기
위한 법무부의 계속되는 싸움에 있어
서 또 다른 중요한 진보이다. 본 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이테크 분야의 가격
카르텔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관소에서
금일 제기된 소송에 의하면,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 사이,
Hynix는 공모하여 특정 컴퓨터 및 서
버 제조업자를 위해 판매하는 D램 가
격고정을 하였다. 가격카르텔로 직접
영향을 받은 고객은 Dell Inc.,
Compaq Computer Corporation,

Hewlett-Packard Company,
Apple Computer Inc., Inter-
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및 Gateway Inc.이다.

「본 건은 우리 형사사건 심사의 국
제적인 범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카르텔을 소
추 및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내를 넘
어 국외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법무부 반트러
스트국 R. Hewitt Pate 국장은 언급
했다.

Hynix는 다음의 공모를 함으로써
제소되었다.

- 미국과 그 외의 곳에서 경쟁업자와
특정 고객을 위해 판매하는 D램의
가격에 대해 의논하기 위한 회합,
의논 및 연락에 참가한 것
- 이러한 회합, 의논 및 연락 가운데
에서 특정 고객에게 판매하는 D램
에 일정수준의 가격을 매기는 것에
동의한 것
- 도달한 합의에 따른 가격견적서를
작성한 것
- 합의된 가격의 엄수를 감시 및 강요
할 목적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D램
의 판매에 대해 정보교환을 한 것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나, 답변
결정하에서 Hynix는 다른 D램 제조
업자에 대한 계속중인 심사에서 정부
에 협력할 것에 동의했다. 금일의 벌
금도 또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Hynix사가 우리의 계속중

인 심사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할 것
을 기대하고 있다」고 법무부 반트러
스트국 Scott D. Hammond 형사
집행담당 차장은 언급했다.

Hynix는 셔먼법 제1조 위반으로
제소되어,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일어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에
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년의 금고형 및 최고 35만 달
러의 벌금이 과해지게 될 것이다. 동
법정의 벌금상한액은 다음 금액 중 어
느 쪽이든지 법정상한액을 초과한 경
우에는 범죄로 공모자가 얻은 이익의
2배액 또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의 2배액까지 인상할 수 있다.

Hynix는 독일 제조업자 Infineon
Technologies AG(Infineon)에 이
은 두 번째로 D램 가격카르텔에 대해
유죄담변에 동의한 주요 반도체기업
이다. 2004년 10월 Infineon사는
유죄담변을 함과 동시에 1억 6,000
만 달러의 벌금을 과하는 판결이 내
려졌다.

2004년 12월, Infineon의 임원 T.
Rudd Corwin, -Peter Schaefer, -
Gunter Hefner 및 Heinrich
Florian의 4명은 D램의 가격카르텔
의 공모에 대해 유죄담변을 하였다.
그들에게는 4개월에서 6개월의 금고
가 과해지고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
을 지불했다. 금고형이 과해진
Infineon의 종업원 가운데 3명은 독
일 국민이다.

2003년 12월, 법무부는 Micron

Technology Inc.(Micron)의 지역판 매 매니저였던 Alfred P. Censullo를 심사 방해로 소추하였다. Censullo는 제소에 대하여 유죄의 답변을 하고, 2002년 6월에 대배심에서 Micron사에 제출된 소환장에 대해서 문서를 감추고 변경한 것을 인정했다. Censullo에 대해서는 자택구류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금일의 제소는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의 FBI에 의한 심사의 결과이다.

2005. 4. 21.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법무부, 오클라호마주 주의회에 부동산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계속하도록 요청

법무부는 금일 letter를 발표하고, 오클라호마주 주의회에 대해 현재의 주법을 개정하여 오클라호마의 부동산업자가 서비스 비례요금(fee-for-service) 또는 메뉴가격(menu pricing)이라 불리는 부동산서비스 선택사양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부결하도록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본 법안은 오클라호마주의 소비자에게 부동산서비스 지불금액을 상승시키고, 광범위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배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통상 부동산 브로커는 서비스

를 단일패키지로 집약시켜, 소비자에게 단일가격, 보통은 부동산의 판매 가격의 퍼센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높아지는 소비자 요구와 시장동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업자 중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 서비스의 메뉴를 제시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고객은 스스로의 필요성에 맞는 서비스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법안은 2가지 측면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바라지 않거나 또는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체에 대해 지불해야만 된다면 집을 매매하는데 수천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우려가 있다. 둘째, 서비스 비례요금에 의한 경쟁이 없다면 전통적인 full service의 패키지는 상승할 우려가 있다.

「국내 시장에 있어서 경쟁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많은 소비자가 돈을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법안은 오클라호마주의 시민에게서 서비스 비례요금을 채용하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저가격 및 맞춤형 서비스라는 경쟁으로부터 살아남는 혜택을 얻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고 Pate 법무부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했다. letter는 부동산서비스로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손해, 더욱이 경쟁을 폭넓게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손해를

주게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심의중인 본 법안은 법안673호이며, 오클라호마주의 주의회는 2005년 4월 11일 월요일에 투표를 할 예정이다. 본 법안은 현행의 Oklahoma Real Estate License Code, 59O.S. 2001§§858-351-4를 개정하는 것이다. 오클라호마주 의회에 송부된 문서의 복사본은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2005. 4. 8.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E U

EU위원회, 로이터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금융정보 데이터 제공 사업자인 Moneyline Telerate Holding(이하 Telerate)을 그 경쟁 사업자인 Reuters Limited(이하 Reuters)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위원회는 특히 금융 시장 데이터 플랫폼(financial market data platforms; 이하 MDPs)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벌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Telerate의 MDP 제품들에 대한 세계적인 독점 라이선스를 금융 시장 데이터 기술 제공업체인 US Hyperfeed Technologies에게 넘

기겠다고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EU위원회 경쟁위원인 Neelie Kroes는 “우리는 이번 성과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와 의 밀접한 공조 속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었으며, MDP 시장에서의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EU위원회가 기업결합에 관한 검토 권한을 가지는 새롭고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찾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12개 회원국들의 경쟁법에 의거하여 검토를 해야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uters는 금융시장 데이터 정보 및 금융전문 멀티미디어 뉴스 등을 제공하는 세계 2대 사업자 중의 하나이다. 특히 화폐시장 및 주식 관련 시장 정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Reuters는 주요 경쟁사인 Bloomberg와 어느 정도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Bloomberg는 금융시장 정보 중에서도 주로 자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전송하기 위하여 MDP보다는 다른 수단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Telerate 또한 세계적인 규모의 금융시장 정보 데이터 및 뉴스 제공 사업자이며,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U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 사건에서 실시간의 시장정보 제공과 MDPs

에서의 경쟁적 효과를 조사했다. 전자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형성되거나 결합 시장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것이라는 어떠한 지표도 찾아내지 못했다. 기업결합 후에도 시장에는 충분한 수의 경쟁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MDP 제공사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결합기업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조합하면 MDPs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MDPs란 다양한 정보처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경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euters와 Telerate는 무기한의 독점적 라이선스를 Hyperfeed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라이선스 협정으로 인해 Hyperfeed는 Reuters에 대항해서 효과적인 경쟁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 5. 24. EU위원회

EU위원회, 유선전화망에서의 통화 착신과 관련한 독일 통신 규제당국의 결정을 거부

EU위원회는 선택적 네트워크 사업

자들(alternative network operators; 이하 ANOs)이 제공하는 전화 통화 착신 서비스를 사전 규제하지 않기로 한 독일 통신·우편규제청(이하 RegTP)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전자통신지침(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Framework Directive(2002/21/EC)) 제7조를 토대로 한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다른 네트워크로 전화를 걸 때마다 서로 통화 착신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금은 일반적으로 전화를 거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RegTP는 Deutsche Telecom의 착신 요금은 사전 규제하는 반면, ANOs들의 요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EU위원회의 이번 거부권 행사에 따라 RegTP는 이러한 규제 정책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위원인 Neelie Kroes는 “위원회는 선택적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독일의 통화 착신 시장이 실제로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면 요금을 낮추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gTP는 Deutsche Telekom(이하 DT)이 착신 통화요금을 부과하면서 ANOs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만큼, ANOs들이 경쟁적인 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할 지위에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NOs들은 충분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통신지침에 따라 사전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RegTP의 입장이다. 그러나 EU위원회는 DT가 ANOs들로부터 착신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지위가 구매자인 DT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DT의 착신요금은 사전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RegTP는 실무상 ANOs들의 시장 지배력을 분석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의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ANOs들의 착신요금을 규제해 왔다. 그러한 임시적인 RegTP의 개입이 전자통신지침의 요건에 따른 적절한 시장 분석에 기초한 사전 규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EU위원회의 입장이다.

정밀조사를 토대로, EU위원회는 관련 시장에서 각 ANOs가 100% 시장점유율(본질적으로 네트워크 및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임)을 갖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와 동일한 자국의 시장을 분석한 다른 유럽 규제기관들은 그들 나라에서 ANOs들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EU 위원회에 통지한 바 있다. 더욱이 EU 위원회는 독일 RegTP가 시장지배력 가능성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자통신지침에 따르면 회원국 규제기관들은 전자통신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부과 또는 제거하는 조치를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 지배력 등에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규제기관의 조치들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국 국내 규제기관들에게 적절한 사전규제를 부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각 ANOs들의 요금 규제에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전자통신지침이 회원국 규제기관들에게 적절하고 균형적인 해결방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권(자유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 5. 17. EU위원회

영 국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이하 OFT)은 가격과 관련하여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온 The Officers Club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남성용 의류 아울렛이 광고를 하면서 1988년 오인유발에 관한 광고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The Officers Club은 영국 전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남성용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다. OFT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70% 할인판매'라는 광고 전략을 통해 자사가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상을 갖도록 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할인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되었던 가격은 실은 그 회사의 실제 판매가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법원은 The Officers Club이 '70% 할인판매'라는 광고 전략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OFT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문에서는 "사업자는 실제로 높은 상품 가격으로 상당한 양을 충분한 기간 동안 잠재적 고객들에게 제공해 왔어야 한다. 그래서 고객들이 제시된 실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그 상품을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OFT의 최고 책임자는 John Vickers 법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할인 판매는 매우 중요한 경쟁전략이며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주지만, 오인유발적인 할인 광고는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비자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모두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2005. 5. 26. 공정거래청

공취위, 2004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상황 발표

공정취인위원회는 작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처리상황을 발표했다. 공취위는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운용이라는 기본방침 아래, 특히 가격카르텔·입찰담합행위, IT·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독점·신규참가 저해행위, 중소기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우월적지위의 남용·부당염가판매 등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사 사건의 개황

- 2004년도에 있어서 35건, 472명의 사업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
- 구체적으로는 입찰담합 22건, 독점 2건, 가격카르텔 2건, 불공정한 거래방법 8건, 기타(사업자단체에 의한 회원의 활동 제한) 1건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건처리를 하여 실효성을 높였음.
- 신속한 법운용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한 전사건의 평균 심사 기간은 약 8개월이었음(전년도에 비해 약 1개월 단축).

- 니가타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에서 니가타시 직원에 의한 입찰담합 등 관여 행위를 밝혀냄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음.
- 2004년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219명의 사업자에 대해 총액 111억 5,029만 엔의 납부 명령을 확정함(과거와 비교하여 2번째로 많은 금액).

2. 주된 사건

(1) 입찰담합·가격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대처

- 니가타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사건(2004년 7월 28일 총113사에 대해 권고, 2004년 9월 17일 심판개시결정(86사, 그 후 3사에 대해서는 동의심리판결을 실시했음), 권고 심리판결(27사))
- 프레스토 레스트·콘크리트에 의한 교량의 신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사건(2004년 10월 15일 권고, 2004년 11월 18일 심판개시결정)
- 카가와현에 소재한 금융기관 6사에 의한 계좌 대채 수수료 카르텔 사건(2004년 7월 27일 권고심리판결)

(2) IT·공익사업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퍼스널 컴퓨터용 기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 관련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관한 사건(2004년 7월

13일 권고, 2004년 9월 1일 심리판결 개시 결정)

- PC에 탑재하는 CPU와 관련된 독점 사건(2005년 4월 13일 권고심리판결)
- 이동전화 컬러링과 관련된 공동의 거래거절사건(2005년 3월 24일 권고, 1005년 4월 26일 심판개시결정, 권고심리판결(1사))

(3) 경쟁자 배제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

- 유선방송 사업과 관련된 독점사건(2004년 10월 13일 권고심리판결)
- 사회보험 노무사회에 의한 회원의 광고활동 등의 제한에 관한 사건(2004년 7월 12일 권고심리판결)
- 의사회에 의한 회원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에 관한 사건(2004년 7월 27일 권고심리판결)

(4) 중소기업자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신속한 대응

- 대규모 소매사업자 등의 납품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사건(총 5사건, 권고심리판결 4사, 심판개시결정 1사)
- 주류 소매업자의 부당염가판매 사건(2004년 7월 30일 4사에 대해 경고)

(5) 공공 조달 분야에 있어서의 덤핑

수주 문제에 대한 대응

- 국가 또는 도도부현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입찰에 있어서의 덤핑 수주에 관한 사건(2사에 대해 경고)
- 설계 컨설턴트 업무 등과 관련된 입찰에 있어서의 덤핑 수주에 관한 사건(2사에 대해 경고)

3. 심판 및 심판 심리판결

- 27건의 심판개시결정을 하는 한편, 심판 절차를 거친 심리판결로서 44건을 심리판결 함.
- 2004년도 중의 심판 계속 사건은 167건(이 중 135건은 과징금 납부 명령과 관련)이며,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음.

2005. 5. 26.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일본 덴산 파워 모터 주식회사에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덴산 파워 모터 주식회사(이하 일본 덴산 파워 모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제1항제3호(하청대금의 감액 금지)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권고 조치했다.

일본 덴산 파워 모터는 자사가 판매하는 산업용 모터를 제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를 하청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

객들의 원가절감 요청에 대응하고 이를 기초로 세운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청사업자에게 산업용 모터의 부품 등의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할 수 없는 하청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청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 중에서 「특별 가격 협력금」이라고 칭하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했다.

또한 일본 덴산 파워 모터는 하청대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가 일정액을 넘었을 경우에 어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부 하청사업자에 대해서는 어음 교부 대신에 현금 지불을 하고 어음 기간 분의 금리 상당분으로서 자사의 단기 조달 금리 상당액을 넘는 금액을 하청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 중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하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시에 미리 정한 하청대금을 감액하여 하청대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덴산 파워 모터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의 지불시에 특별 가격 협력금이라고 칭하고 하청대금 중에서 감액한 액수 및 자사의 단기 조달 금리 상당액을 넘는 금액을 하청대금에서 감액한 금액(총액 24,598,792엔)을 하청사업자 95개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불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하청사업자에게 귀책사

유가 없는 경우, 하청대금의 액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하청사업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사내 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그 내용을 자사의 임원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2005. 5. 24. 공정취인위원회

「적정한 전력거래에 대한 지침」 개정

공정취인위원회와 경제산업성은 공동으로 지난 1999년 12월 전기사업 분야에 있어서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의 관점으로부터 독점금지법상 혹은 전기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등을 규정한 「적정한 전력거래에 대한 지침」을 작성해서 2002. 7월에 일부 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개정 전기사업법이 시행되어 탁송 공급 업무에 수반하는 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나 차별적 취급의 금지 등이 규정되었고, 2002년 지침 개정 이후, 지금까지 행정당국에 상담이 의뢰되었던 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전기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적정한 거래를 한층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본 지침의 개정을 실시했다.

2005. 5. 20. 공정취인위원회